

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(제5조의3제1항 관련)

구분	정보공개서 기재사항	변경 기한
변경 등록 사항	별표 1 제1호: 전체 별표 1 제2호: 가목, 나목(가맹본부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, 다목부터 마 목까지, 사목(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 및 자목 별표 1 제3호: 나목 별표 1 제4호: 전체	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
	별표 1 제2호: 차목 별표 1 제3호: 자목1) 및 2) 별표 1 제5호: 가목, 나목1)·3) 및 다목 별표 1 제6호: 라목부터 차목까지 별표 1 제8호: 전체 별표 1 제9호: 전체	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
	별표 1 제2호: 바목 및 아목 별표 1 제3호: 다목부터 아목까지, 자목3) 및 차목 별표 1 제5호: 나목2) 별표 1 제6호: 가목 및 나목 별표 1 제10호: 전체	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 일. 다만, 재무제표를 작성하 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 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변경 신고 사항	별표 1 제2호: 나목(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), 사 목(대표자 이외의 임원과 관련 된 정보만 해당한다) 별표 1 제3호: 가목, 카목 및 타목 별표 1 제7호: 전체	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